

「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지연 의원 외 4인

2. 찬 성 자 : 김근한 의원 외 7인

3. 제안이유

-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구체화 및 계획 수립 시 필요한 때에는 실태조사 또는 관련 기관·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 요청이 가능하게 하고,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청소년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청소년 교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27조)
-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(안 제31조)

5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4조, 제15조, 제15조의2, 제27조
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2조, 제53조, 제55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구미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사항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청소년 기본법」,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, 청소년 정책수립 및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, 청소년 활동 지원과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특히, 집행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를 점검하고 연도별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구미시 청소년육성 정책이 체계적·유기적·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